



“최상의 CM서비스,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한 국 C M 협 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CM담당본부장

제 목 회원의 징계 예정에 따른 소명 요청

1. 귀사의 변영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우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후 회원으로서의 정관에 의한 권리의무행사 등 일체의 협회활동을 하지 않아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도 제2차 이사회(2016. 4. 21)에서 청문을 거쳐 적정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키로 의결하였기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오니 2016. 5. 13(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 래

가. 징계대상 : 4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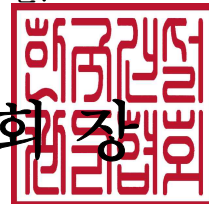
나. 징계사유 : 정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관련규정의 준수"와 "회비납부" 임무 불이행

다. 징계의 종류 : 정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출석정지,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라. 참고사항 : 징계처분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정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박탈된 날부터 5년 동안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음.

붙임 : 협회 정관 중 회원관리에 관한 조항 1부. 끝.

한 국 C M 협 회 장



대리 박 영 덕

실장 천 금 자

시행 운영지원실 - 86 (2016. 4. 26)

우 0667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전화 02-585-7092

전송 02-585-2689

<http://www.cmak.or.kr>

cm@cmak.or.kr

협회 정관 중 회원관리에 관한 조항

제5조(회원) ①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일반회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영위 하는 자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일반회원 이외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

③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거나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5년간은 회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회는 회원이 된 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이 정관 및 다른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회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품위보전
2. 정관 및 관련규정의 준수
3. 회비납부
4. 기타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준수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①회원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 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다.

②회원이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위는 상실된다.

제35조(징계) ①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회원이 정관에 정한 의무에 배치하여 회원의 단결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2.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때
4. 기타 정관이 정한 의무를 태만이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3회 이내의 출석정지
3. 회원·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정지
4. 회원·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박탈

③회원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